

2019년도 제2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29.(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2건(안건번호 제2019-157033호~15708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본 심의 안전 대상물들은 국내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들의 복제물 또는 압축파일로 만들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들임. 이들 음악복제물들은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 전송한 것으로 보여,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들 불법복제물들로 인하여 합법적인 저작물시장에 영향을 미쳐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수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라 복제 전송 중단 및 삭제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본 심의에 상정된 50안건은 52개 음악 저작물의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채증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때,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 법에 의해 시정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함.
- C 위원 : 본 심의 안전 대상물들은 국내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의 복제물들을 압축파일로 만들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이들 음악복제물들은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 전송한 것으로 보여 이임.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라 복제 전송 중단 및 삭제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금번 심의안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

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ㄹㄹㄹㄹㄹ 등 9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대한 가결의견임.

2019년 제27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9.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